

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서류

■ 제출 서류 | 서류접수기간: 5월 14일(수) ~ 5월 18일(일)

구분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
공통 서류	필수	공급(특별)신청서, 확약서, 서약서	- 견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 서약 등(서약서로 대체)	
	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	- 견본주택에 비치	
		인감증명서(본인 발급용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-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	
		인감도장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	
		신분증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의 경우 무인 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) 등 (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: 외국인 등록증)	
		주민등록표 등본 (전체 포함)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	
		주민등록표 초본 (전체 포함)	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
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시 필요	
		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	-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을 당첨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설정(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)	
	추가 해당자	주민등록표 등본 (전체 포함)	배우자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비람)
복무확인서		본인	-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을 받으려는 경우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4항)	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필수	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	- 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	
		인감도장	본인 (청약자)	-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	위임장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에 비치	
	신분증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) 등 (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: 외국인 등록증)	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가 확인되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. 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5.04.18)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 ※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관련구비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상기 서류의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